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3.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5. 23. 홍지광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2023. 5. 25.
- 다. 상정일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6. 15.)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홍지광 의원】

### 가.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 청년문화예술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청년문화예술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청년문화예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참여·지원(안 제8조 ~ 제9조)
-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위탁(안 제10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가. 제정 경위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5월 23일 홍지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역량강화를 통해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 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자립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나.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현황

- 2023년 5월 기준, 서울시에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인은 약 59,444명이며, 이 중 마포구가 5,167명(8.7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음.

- 특히, 마포구에 등록된 예술인 중 65.8%인 3,420명이 청년 예술인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마포구 청년예술인 현황(2023. 5월 기준)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원(명)	5,200	<b>999</b>	<b>2,421</b>	1,220	374	105	53	28
비율(%)	100	<b>19.2</b>	<b>46.6</b>	23.5	7.2	2.0	1.0	0.5

- 출처: 2023.5.26.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완료자
- 청년예술인: 3,420명(마포구예술인활동증명완료자의 65.8%)

※ 마포구 청년인구: 97,223명 (2023년 5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현황)

- 현재 청년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조차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 예술인 개인의 창작활동 지원이나 인력 양성, 행사 중심의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 청년문화 활성화의 기반조성이나 네트워크 구성, 교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 청년 문화사업의 지속성 확보 등 청년 문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4. 3. 28.> 4. 삭제 <2014. 3. 28.> 5. 삭제 <2014. 3. 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6. 5. 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6. 5. 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권 조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sup>3)</sup>.

- 이에, 체계적인 청년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마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기성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기반이 취약한 청년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 목적, ▶ 정의,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 동 조례의 지원대상인 안 제2조제2호는 ‘청년 예술인’의 정의로 청년이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sup>4)</sup>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여 마포구 청년 예술인 지원기준을 완화한 규정임.
- 대부분의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성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기반이 열악하여 예술활동증명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예술인의 경우 자격요건의 비현실성이 존재하여 지원 기준을 개선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실제 집행과정에서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김경례,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인문사회21》통권8호 3권,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p.1187.

4)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 안 제7조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기능을 기 설치된 청년네트워크에서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sup>5)</sup>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 보다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현재 마포구 청년 예술인에 대한 현황 자료가 미비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으므로, 마포구 실정을 반영한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 라. 검토 결과

5)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동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청년 예술인들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5호 라목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도 채워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수정안

의안 번호	23-79 관련
----------	----------

발의년월일 : 2023. 6. 15.

발의자 :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 1. 수정이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3. 6.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표기를 삭제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내용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u>만 19세</u> 이상 34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u>19세</u> ----- ----- ----- -----.</p> <p>2. (원안과 같음)</p>